

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2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007. 2. 9 구미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.

이 유

1. 재의요구 조항 :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6조제2항

제46조제2항중 “주차장·화단”을 “주차장(철골조립식, 기계식주차장에 한함)”으로 하고, 동조동항 제2호를 삭제하며, 동조동항 “제3호”를 “제2호”로 한다.

2. 이 유

- 보행자 통행이 많은 시가지 도로에서 건축후퇴선(대지내 공지)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진입차량은 부득이 보도를 횡단하여 진·출입하여야 하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, 차량 등의 원활한 운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,
-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에 주차장, 화단의 설치 및 조경식수의 삭제는 미관지구의 본래 목적인 개방감 확보, 출입의 용이 및 가로변 미관에 부정적이며, 미관지구로의 용도지구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
-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합니다.

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2항중 “주차장·화단”을 “주차장(철골조립식, 기계식주차장에 한함)”으로 하고, 동조동항 제2호를 삭제하며, 동조동항 “제3호”를 “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